

# 고창고등학교 학교 규칙

전면 개정 2025. 2. 5.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교는 초·중등교육법 제45조에 의하여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 및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본 학교규칙(이하 “학칙”)을 제정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고창고등학교라 칭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모양성로 50(교촌리 264번지)에 둔다.

## 제2장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제4조(수업연한)**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학년제)**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

**제6조(학기)**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7조(휴업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①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국경일, 공휴일
2. 개교기념일 (4월 14일)
3. 하계휴가: 당해 학년도 교육과정운영계획에 의한다.
4. 동계휴가: 당해 학년도 교육과정운영계획에 의한다.

5. 학년말 휴가: 당해 학년도 교육과정운영계획에 의한다.
6. 학교장이 정한 재량휴업일
  - ② 제1항의 2호는 학교장이 정한 재량휴업일에 준하여 실시하되, 교육과정운영 상 휴업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제1항의 3, 4, 5호 휴가기간은 제10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④ 학교장은 제1항 각호 외에 비상재해 및 기타 긴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휴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3장 학급편성 및 학생정원

**제8조(학급수)** 학급편성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에 의하여 매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정하여 통보한 학급수로 한다.

**제9조(학생정원)** 학생 정원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에 의하여 매년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이 정하여 통보한 학생 정원으로 한다.

### 제4장 교과·수업일수·고사·교외체험학습

**제10조(교육과정)** ①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의 교육과정에 관한 고시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 ② 학생이 3년간 이수하는 총 학점은 192학점 이상으로 한다.
- ③ 192학점은 교과 174학점, 창의적 체험활동 18학점으로 구성한다.
- ④ 학생이 3년의 수업연한 내 192학점을 균형있게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한다.
- ⑤ 정규 일과시간 내외에 편성·운영되는 공동교육과정 및 온라인학교 개설 과목은 학기당 최대 2개 과목으로 제한한다. 단, 교원 수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도교육청의 승인을 통해 학기당 3개 이상 과목 수강 허용
- ⑥ 학교 밖 교육에 대한 학생 1인당 수강 학점은 3년간 최대 8학점으로 한다.
- ⑦ 과목의 수업량 기준은 학점으로 적용한다.
- ⑧ 2025학년도 입학생부터 1학점당 수업량은 학기당 최소 16회(1회당 50분)로 운영한다.
- ⑨ 2·3학년의 1학점당 수업량은 학기당 최소 17회(1회당 50분)이며, 그중 1회

는 교과 융합 수업 등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제11조(수업 운영 방법 등)**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 ②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류·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을 허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본교의 체험학습 규정에 의거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2조(교과)**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와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라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제13조(수업일수)** ① 본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 ② 다만,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 각 호 기준의 10분의 1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하되 본교의 체험학습규정에 의한다.
- ④ 재입학·편입·전입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다(법정 수업일수 190일 이상이 안 될 수도 있음).

**제14조(교외체험학습)**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거나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 ② 기간은 횟수에 관계없이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간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 ③ 교외체험학습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하되, 학기초와 학기말 시험 기간, 성적확인 기간은 피해서 실시한다.
- ④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

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 ⑤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고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5일 이내 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 한다.
- ⑥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 ⑦ 기타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에 따른다.

**제15조(학생평가)** ①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② 평가의 영역, 방법, 횟수, 반영비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의거 교과협의회에서 정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한다.
- ③ 기타 자세한 평가방법 및 평가 관리는 본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한다.

## 제5장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제16조(입학 시기)** 입학, 학생의 재입학 또는 편입학의 시기는 본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7조(입학 자격)**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① 중학교를 졸업한 자
- ②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중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제18조(입학전형방법)** 입학 전형은 학교장이 실시하며 중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를 말한다)의 기록 또는 선발고사에 의하거나 이를 병합한 방법으로 하되, 입학전형방법 등 입학 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학교장이 정한다.

**제19조(재입학)** 퇴학한 자가 재입학할 수 있는 학년은 퇴학 당시 학년 이하 학년에 한한다.

**제20조(전·편입학)** ① 학교의 장은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일반계고등학교, 전문계고등학교, 예·체능계고등

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및 학력 인정 각종 학교간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
- ③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3항과 제82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학칙 제17조와 제2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학·전학 및 편입학 할 수 있다.
- ④ 본교의 전·편입학 및 재입학 방법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 계획을 따른다.

**제21조(입학 서류)** 본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전·편입학 서류)** ① 전·편입학하려는 자는 전·편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원 재적교의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 용지에 출력한 출력물,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필요한 각종 보조부 원본을 원 재적교에서 이송 받아야 한다.

**제23조(휴학)**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휴학하려는 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만한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보호자 연서로 학교장에게 휴학원을 출원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휴학을 허가하는 기간은 매회 마다 3월 이상 1년 이하로 하되 3회 이상 거듭할 수 없다.
- ③ 병역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휴학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④ 휴학한 자가 휴학 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 사유가 소멸하여 복학을 원할 경우 보호자 연서로 복학원을 출원하여 복학하며, 복학 시기는 제24조 제2항의 출석일수를 충족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제24조(자퇴)** 스스로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 연서로 그 사유를 기재한 자퇴원을 제출하되, 이후 절차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에 의한다.

**제25조(수료 및 졸업)** ① 각 학년의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출석일수와 교육과정 이수 정도를 평가한 결과로 정한다.

- ②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교의 전 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한 자와 교과목별 조기 이수에 의하여 조기 졸업하는 자에게는 학교의 장이 정한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명예졸업장을 수여할 수 있다.
  - 1. 본교에 학적을 두었으나 졸업하지 못한 자로서 국가발전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
  - 2. 재학중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를 당한 자
  - 3. 재학중 학교교육활동 이외의 사회 공익을 위한 활동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자
- ⑤ 명예졸업 대상자는 교직원 및 동문회에서 추천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한다.
- ⑥ 명예졸업 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는 당해학년도 졸업식 때 명예졸업장을 수여한다.
- ⑦ 명예졸업 대상자의 성적은 당해학년도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해 처리한다.
- ⑧ ④~⑦을 포함한 그 밖의 사항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6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26조(조기진급·조기졸업)** ① 학교의 장에 의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의 대상자로 선정되어 소정의 평가 과정을 거쳐 조기 이수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교과목을 조기에 이수할 수 있다.

- ② 교과목별 조기 이수에 의하여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1학년에서 3학년으로 조기진급 할 수 있다.
- ③ 교과목별 조기 이수에 의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2학년 과정 이수 후 조기졸업 할 수 있다.

**제27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선정 시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은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학년 초 3월 이내에 하도록 한다. 단, 신입생의 조기진급 대상자 선정은 2학기 시작 전까지 한다.

**제28조(선정 대상자 기준)** 학교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① 직전 학기까지 이수한 모든 교과목의 석차등급에 이수 단위수를 반영한

석차백분위점수의 합이 해당학년 입학 배정 인원의 5% 이내이고(단, 전북과학고는 20%이내인 자), 교과목(이수한 단위 수 기준)의 80% 이상 학업성취도가 A인 자.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다. 단, 과목 성취도가 등급이 아닌 경우(예: 예체능)는 제외함.

- ②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검사에서 지능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 ③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 또는 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제29조(조기 진급 환원 조치)** 조기 진급 후 부적응 현상이 심각할 경우에 학교장은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원에 의하거나 동의를 받아 차년도 시작 후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할 수 있다.

**제30조(교과목별 조기 이수의 학력 인정)**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한 자는 본교 해당 학년의 모든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다.

**제31조(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절차)** ①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은 매 학년 초 1개월(3월 말) 이내에 한다. 단, 신입생의 조기진급 대상자 선정은 2학기 시작 전까지 한다.

- ②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③ 제27조의 기준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하 “조기진급·졸업대상자”라 한다)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야 한다.
- ④ 각급학교의 장이 제3항에 따라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할 때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 ⑤ 조기진급·졸업대상자가 제4항에 따라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제32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세부사항)**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제33조(졸업장)** 학교장은 학교의 전 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조기 졸업하는 자에게는 졸업장을 수여한다.

## 제7장 수업료·입학금·기타 비용 징수

- 제34조(수업료 등)** ① 학교의 장은 수업료·입학금·기타의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②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는 ‘전북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다.  
③ 기타의 비용(급식비, 기숙사비, 현장체험학습비, 방과후교육비 등) 징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제35조(수업료 등의 감면)**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와 체육 등, 특기 신장이나,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 제8장 학생 포상 및 학생 징계

- 제36조(학생 포상)** ① 학교장은 교과목별로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 성실하고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과 효행, 봉사에 있어서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학교의 명예를 높인 자 또는 학교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학생 포상의 종류,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 제37조(학생징계)** ①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②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은 고창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으로 위임하여 운영한다.

## 제9장 학생 자치 활동의 조직 및 운영

- 제38조(학생자치활동의 조직)** ① 학생자치활동의 조직은 학생의 희망과 지도교사의 배치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학생자치활동의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민주적인 학생 자치회 활동(학급, 전교다모임)  
2. 학예, 체육, 특기와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3. 정서함양과 심신수련을 위한 활동  
4. 학교의 전통, 향토의 민속과 전통 문화의 계승 발전에 관한 활동  
5. 각종 봉사활동

- 6. 청소년단체 참여 활동
- 7. 기타 학생 신분에 맞는 활동

**제39조(학생자치활동의 운영)** ① 학생자치활동은 학생의 자율적, 자발적인 운영이 되도록 한다.

- ② 학생자치활동은 학생지도위원의 지도를 받아 활동하도록 한다.
- ③ 학생자치활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기본운영비에서 지원한다.

**제40조(학생자치활동규정)**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둔다.

## 제10장 기타 법령 에서 정하는 사항

**제41조(출결사항)** 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 ① 학교규칙에 의거한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5. 「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7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6.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분	대 상	일수
결 혼	○ 형제, 자매, 부, 모	1
입 양	○ 학생 본인	20
사 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 부모의 조부모(중조부모, 외중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중조부모, 외외중조부모)	3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사실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9. 시·도경찰청 「소년업무규칙」에 따른 경찰관서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10.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하는 경우
11.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직에 선출되어 의정활동(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당일 참석)을 사유로 수업일수의 10% 이내에서 결석하는 경우
12. 출결사항은 교육부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지침 및 본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2조(결석의 종류)** 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 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방송·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4.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 먼지와 관련된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5.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만성질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6. 환경부로부터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 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4~6의 경우 결석 신고서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② 미인정 결석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5.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 기관 출석, 체포, 도피, 구속(구인, 구금, 구류 포함), 교도소 수감 등)
6.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7.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③ 기타 결석

1.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3.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에 따라 결석한 경우
  - 공직에 선출되어 의정활동(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당일 참석)을 사유로 수업일수의 10%를 초과하여 결석한 경우
  - 후보등록자 본인이 선거운동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으로서 정당활동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4.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결석 처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지침 및 본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3조(지각·조퇴·결과)** ① 지각·조퇴·결과는 결석에 준하여 처리하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다.

1. 지각: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2. 조퇴: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과 하교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
3. 결과: 수업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한 경우
4. 출석인정 결석의 각 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5.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한다.

6.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7.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8.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각 횟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 ② 지각·조퇴·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지침 및 본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11장 장애인 차별 금지

- 제44조(차별금지)** ① 학교장은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면,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학교장은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학교장은 취업 및 진로교육, 정보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④ 학교장 및 교직원은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보조원,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5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 학교장은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2.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3.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 제공

- 제46조(개인정보보호)** ① 장애인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하에 수집되어야 하고, 당해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접근이나 오·남용으로부터 안전하여야 한다.

제47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①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8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①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12장 학업중단 숙려제

제49조(학업중단숙려제) 학업 중단이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히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하여 숙려할 기회를 주기위하여 학업중단 숙려제를 운영한다.

### 제50조(학업중단예방위원회)

①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협의를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둔다.

1.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계획 수립
2.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3.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을 위한 교내 협업체계 구축

② 학업중단예방위원회는 위원장인 교감을 포함하여 담임교사, 인성인권안전부장교사, 학년부장교사, 상담교사로 구성한다.

### 제51조(학업중단숙려제 운영)

① 학업중단 징후가 발견되거나 유예원을 제출한 경우 담임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 면담을 실시한다.

② 면담 과정에서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학업중단 숙려제를 반드시 안내한다.

③ 숙려기간 중 전문 상담교사 또는 외부기관 상담을 실시한다.

④ 학생의 소재·안전을 정기적으로 파악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며 학생이 상담을 거부 또는 태만히 하는 경우 교육적인 지도를 실시한다.

⑤ 숙려기간 종료 후 학업에 복귀하는 경우 학교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및 지도를 실시한다.

⑥ 기타 숙려제 운영 방법(숙려 기간, 참여 횟수, 참여 대상 및 참여 불가 학생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전북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에 따른다.

## 제13장 기숙사 운영

### 제52조(기숙사)

- ① 본교에 기숙사를 둔다.
- ② 기숙사에 입사하려는 자는 보호자 연서로 입사원을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이를 정한다.

## 제14장 학칙 개정

제53조(개정절차) ① 학교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칙 개정 절차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칙을 개정한다.

- ② 학생생활규정의 제·개정과 개정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생활규정의 제·개정 관련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제54조(시행규칙) ① 이 학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 ② 학칙에 없는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기타 지침, 훈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부 칙

제1조 이 규칙은 공포한 날(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